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중도부가서비스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주계약에 준함

**나. 보험료 납입기간**

해당사항 없음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주계약에 준함

**라. 보험료 납입주기**

해당사항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주계약에 준함

### 13. 중도부가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시점에 회사가 판매중인 특약을 중도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에 따라 중도에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은 중도부가 신청 시점에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된 경우
- (3) 중도부가대상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이 이미 면제된 경우
- (4) 감액완납된 경우
- (5) 기타 회사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경우

### 14. 중도부가특약의 부가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에 따라 중도부가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을 기준으로 가입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한다. 다만,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와 동일해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월납(일시납 제외)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매 보험료 납입월에 한해 중도부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나. 중도부가특약에 따른 회사의 보장개시

- (1) 중도부가특약의 가입신청을 회사가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2) 제1회 보험료를 받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부가특약에 암보장개시일

등과 같이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개시일

다. 중도부가특약의 특약계약일은 ‘나’ 항의 ‘(1)’ 및 ‘(2)’ 에서 정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한다.

라. 중도부가특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거절, 계약자의 청약철회, 취소, 무효, 해지, 2년 이내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의 효력, 암보장개시일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청약일, 계약일 및 보장개시일 등은 해당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5.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는 약관 제6조(중도부가특약의 가입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서 정한 가입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나.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음에도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다’ 항의 경우에 한하여 중도부가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 16. 기타

- 가.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과 주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내용을 적용한다.